아산시 공고 제2022 - 3030호

2022년 아산시 과금형(콘센트)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

아 산 시장

2022년 이산시 과금형(콘센트)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

1. 사업기간 : 2022. 9. ~ 2022. 12.

2. 신청기간 : 2022. 9. 26.(월) 09:00 ~ 2022. 10. 10.(월) 18:00

(신청 미달 시 2022.10.31.까지 기간 연장)

3. 대 상 자 : 아산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, 다가구주택, 공중시설 등의

소유 · 운영주체 중 과금형(콘센트)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

※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원 불가

4. 대상사업 : 과금형(콘센트)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

가. 총사업비 : 금30,000,000원(금삼천만원)

나. 사 업 량 : 50기

다. 대상시설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,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, 공중시설

| 지원(우선)순위 | 시설종류 | 충전시설 유무 | 제한사항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|
| 1 | 주택 | × | 200세대 이하 | |
| 2 | 주택 | × | 200세대 초과 | |
| 3 | 공중시설, 기숙사 | × | 50주차면 이상 | |
| 4 | 주택, 공중시설 | 0 | 제한없음 | |

※ 주택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,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

※ 공중시설 : 공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기숙사,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, 업무 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관 광 휴게시설 라. 지원금액: (최대) 600,000원/1기당

※ 충전기 1기당 60만원을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자부담

라. 지원기준 : 주차면수에 따른 최대 지원 범위 내 지원

| 구 분 | 50면 이하 | 51~100면 | 101~300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최대 지원대수 | 17] | 27] | 67] |

5. 사업집행방법 및 유의사항

- 가. 콘센트형(과금형) 충전기 설치업체는 자율적 선정(단. 아래사항 모두 충족해야함)
 - ▶ 「전기사업법 |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
- ►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설치, 운영, 유지보수, 민원응대 관리·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나. 유의사항
 - ▶ 과금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형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
 - ▶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. 단,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 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,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►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

6. 신청 및 제출서류

- 가. 신청방법 :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 접수(방문, 우편, 전자우편)
- 방문, 우편 접수처 :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, 아산시청 별관2층 기후변화대책과
- 전자우편 접수 : jhst30@korea.kr (기후변화대책과 담당자)
- 나. 신청서류
- 신청서[서식1]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[서식2] 각1부
- 설치계획서[서식3] 및 구비서류 각 1부
- 다. 문 의 :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(☎041-530-6255)

7. 심의 및 결정

- 가. 선정방법 : 아래 항목을 상대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득한 보조사업자를 예산범위 내 선정
 - 1순위 : (우선대상)충전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상 ※ 1순위에서 마감 시 2순위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순
 - 2순위 : 평가점수 순
 - ① 전기충전시설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(60점)
 - ▶ 평가 기준 : 읍면동 전기충전기 설치비율(별표])
 - ▶ 순위에 따라 0.3점씩 감점 (1위 60점, 2위 59.7, ··· 최저점수 54.9점)
 - ② 충전기 설치 필요도 및 설치장소 적합도(40점)
 - ▶ 평가 기준 : "무공해차 통합누리집" 개방형 전기치충전소와의 거리 (상대 평가)
 - ▶ 순위에 따라 0.2점씩 감점 (1위 40점, 2위 39.8, ··· 최저점수 36점)
 - ※ 마지막 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접수 순으로 선정
- 3순위 : (일반대상) ① 충전기 미설치 시설 → ② 평가점수 순 나. 아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

8.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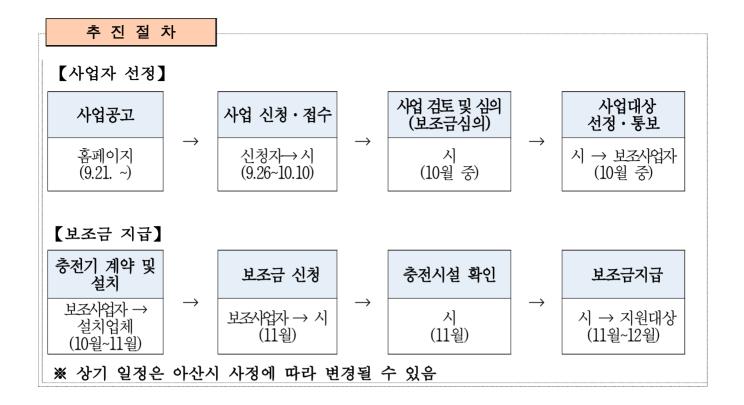
-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(보조사업자→시)
- 제출서류 : 보조사업 실적(정산) 보고서[서식4] 및 구비서류
- 확인 후 보조금 지급(시→보조사업자)

9. 기타

-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보조금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(현금지급 불가)
-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아산시 결정에 따름

【지원 제외】

- 기타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·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



10. 『2022년 아산시 과금형(콘센트)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설명회』 개최

가. 일 시 : 2022. 9. 27.(화) 11:00 ~ 12:00

나. 장 소 :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(별관 2층) 사무실 내

다. 참가대상 : 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

등록된 과금형(콘센트) 충전기 업체

라. 참가신청 : 사전에 문의처로 연락

라. 주요내용 : 주요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등

마. 문 의 처 :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(T.041-530-6255)

[별표1]

읍면동별 전기차 등록 및 충전시설 현황(자료출처 :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)

(2022년 8월 기준, 단위:대)

| 행정동 | 전기차 등록 | 충전시설 | 충전기 비율 | 비고 (우선순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u></u> 합계 | 2,300 | 1,098 | 2.09 | |
| 염치읍 | 53 | 12 | 4.42 | 5 |
|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 509 | 301 | 1.69 | 11 |
| | 57 | 8 | 7.13 | 2 |
| 탕정면 | 239 | 44 | 5.43 | 4 |
| 음봉면 | 147 | 92 | 1.60 | 12 |
| 둔포면 | 155 | 48 | 3.23 | 8 |
| 영인면 | 64 | 16 | 4.00 | 6 |
| 인주면 | 262 | 24 | 10.92 | 1 |
| 선장면 | 25 | 4 | 6.25 | 3 |
| 도고면 | 42 | 12 | 3.50 | 7 |
| 신창면 | 97 | 73 | 1.33 | 15 |
| 온양1동 | 80 | 52 | 1.54 | 14 |
| 온양2동 | 34 | 14 | 2.43 | 10 |
| 온양3동 | 185 | 181 | 1.02 | 17 |
| 은양4동 | 98 | 63 | 1.56 | 13 |
| 온양동 | 125 | 44 | 2.84 | 9 |
| 은양6 <u>동</u> | 128 | 110 | 1.16 | 16 |

^{※ (}참고) '21. 5. 기준 전국 충전기 대비 전기차 대수 : 2.27

^{*} 출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(산업통산자원부)

[서식1]

과금형(콘센트)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

| | 공동주택 (시설)명 | 5 | 소유자(관리 | 자)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|--|
| 신 청 인 | 소 재 지 | (연락처) | | | | | |
| | 충전시설 현 황 | 기존 충전기 설치 | 대수 | | | | |
| | 설치위치 | | | | | | |
| | 구 분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 | 립, 다세대), 1 | 다기구주택, | 공중시설 | | |
| 설치장소 | 총세대수 | | 총주차면 | 수 | | | |
| | 주 요 | 콘센트형 전기차 <u>충</u> | · 중전기 설치 | | | | |
| | 사업내용 | (신청수량 : 7 | H) | | | | |
| | 계 | 원(보조금 : 원, 자부담 : 원) | | | | | |
| ון אן אן | 보 조 | 보조사업내 | 9 | 소요예산 (원) | 비 고 | | |
| 사 업 비 | 사 업 비 | 그게므라 하하기 호 | 7]-1 2]-1 | , , | | | |
| | 내 용 |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| 선기 설치 | | | | |
| 첨 부: ①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(서식2) 1부. ②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계획서(서식3) 1부.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아산시 과금형(콘센트)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2년 월 일 | | | | | | | |
| | | 신청 | | | 인) | | |
| 아산시장 귀하 | | | | | | | |

[서식2]

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

아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.

- 개인정보 수집 항목
 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번호, 도면
- 개인정보 이용목적
 - 아산시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내용
 - 아산시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홍보자료 활용
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조회
 - 보조금 적정집행 정산조사

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자

성명: (인)

[서식3]

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계획서

| 시 | 설 명 | :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○ 설치 | 기장소 | : | | | | | | |
| ○ 설치 | 디업체 | | | | | | | |
| - 업 | 체 명 | : | | | | | | |
| - 주 | 소 | : | | | | | | |
| - 연 | 락 처 | : | | | | | | |
| ○ 설쳐 | 기대수 | : | 7] | | | | | |
| ○ 사 | 업 비 | : 금 | | 원 | | | | |
| | | (보조금 | : | 원, | 자부담 : | | 원) | |
| ○ 사업 | 법기간 | : 2022년 | 월 | 일 | 2022 | 년 | 월 | 일 |
| | | | | | | | | |
| 구비서 | 류 1. | 콘센트형 | 전기차 경 | 충전기 | 설명서 1 | l부. | | |
| | 2. | 충전기 설 | 치장소(전 | 천용주: | 차구역) 5 | E면 1부 | | |
| | 3. | 충전기 설 | 치비용 | 산출내 | 역서(견적 | 서_모델 | 명포함) | 1부. |
| | 4. | 유지보수 | 계획서 1 | l부. | | | | |
| | 5. | 전기사업계 | 가등록증 | 사본 | 1부.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2022. . .

신 청 인 : (인)

[서식4]

보조사업 실적(정산) 보고서

| ○ 사 업 명 :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보조사업자 : (주소/연락처) |
| ○ 사 업 량: |
| ○ 설 치 장 소 : |
| ○ 보조금 청구액 : 금 원 |
| |
| 구비서류 1. 보조금 청구서(서식5) 1부. |
| 2. 사업자등록증(설치업체) 사본 1부. |
| 3. 보조사업자 통장 사본 1부. |
| 4.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 1부. |
| 5. 유지관리계획서 1부. |
| 6. 공급사실 확인서(서식6) 및 충전기 설치 사진대지 1부. |
| 7. 청렴 이행서약서(서식7) 1부. |
| 2022 |
| 보조사업자 성 명 : (인 |
| 아산시장 귀하 |

[서식5]

보조금 청구서

○ 사 업 명 :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

| 고그치서 | 공급위치 | 고그라(케) | a) ભેમો(ં) | 공급받은 자(보조사업자)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|
| o 日/竹包 | 6 日刊へ | о н г улл | 가급마(전) | 성명 | 주소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○ 청구금액 : 금 원

○ 보조금 지급계좌

| 은행명 | 계좌번호 | 입금자 |
|-----|------|-----|
| | | |
| | | |

상기금액을 2022년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.

2022. . .

청구인(보조사업자) 성 명 : (인)

[서식6]

공급사실 확인서

| ዝԻ <i>ር ፕ</i> Լ | 시 설 명 | | | 소유자(관리지 | ት)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발주자 | 소 재 지 | | (전화) | | | | |
| 시공자 | 업체명 | | | 사업자 등록 번 | 호 | | |
| | 주 소 | | | Ľ | 개표자 | | |
| | 연락처 | | | FAX | | | |
| 설 치 일 | 2022년 | 월 일 | 첱 | ^{걸치제품명} | | | |
| 설치대수 | | 7] | | 총금액 | | | 원 |
| 시공전 사진 | | | | | | | |
| 시공 사진 | | | | | | | |
| 시공후 사진 | | | | | | | |
| 상기요 | 라 같이 콘센트 | 트형 전기차 경 | 충전기를 - | 공급·설치 하였음 2 | -을 확인 022년 | | 일 |
| Ŀ | 발주자 : | | | 성명 : | | · (인) | |
| , | 시공자 : | | | 성명 : | | (인) | |

[서식7]

아산시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특히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 등과 관련 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,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 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자,지 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,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, 지방보 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 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※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- 부정청탁의 금지 및 과태료 부과(제5조 및 제23조)
 -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대료 부과
- 금품 등의 수수 금지(제8조 및 제22조)
 -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공공재정환수법(제9조)
 - 지방보조금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허위청구(5배), 과다청구(3배), 목적외사용(2배)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가된다.

2022.

보조사업자 성명 (서명)

공급자(설치자) 대표 (서명)